

(의안번호 제2860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4.

고성군수

나. 회 부 일 자: 2024. 11. 1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4. 11. 26.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재무과장 이현주)

가. 개정이유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지정 규정 신설 및 위원 수를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상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부위원장 지정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2) 위원을 공적심사위원으로 하므로 위원 수를 공적심사위원 수에 맞게 정비
(안 제5조제2항)
- 3)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가산금” 용어를 “가산세” 로 정비
(별지 제1호서식)
- 4)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에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정비(별지 제3호서식)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55조, 제14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2)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3)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6602호(2024. 9. 13.)]

4) 기 타

가)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1472호

- 예고기간: 2024. 9. 20. ~ 10. 10.
- 예고결과: 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상위 법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위원회 구성 등(안 제5조)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고성군 포상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하였음.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 「지방세기본법」 개정(2020.12.29.)으로 “가산금”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가산세”로 정비하였음.
 -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정비(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지방세기본법」이 2020.12.29. 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지연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11. 26.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